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3.

발 의 자 : 김교홍 · 윤준병 · 문진석
김주영 · 서미화 · 노종면
박수현 · 장철민 · 김동아
정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,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% ~ 10%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암, 희귀질환,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거나, 질병이 치료되어 산정특례가 종료된 후에는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암 환자, 희귀질환 환자,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%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2 신

설).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2(암, 희귀질환 등 추적검사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)

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해당 질환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(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한다.

1. 「암관리법」에 따른 암환자
2. 「희귀질환관리법」에 따른 희귀질환 환자
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

정에 따른 질환의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4조의2(암, 희귀질환 등 추적</u> <u>검사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</u> <u>특례)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</u>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사람 또는 다음 각</u> <u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</u> <u>사람이 해당 질환에 대하여 추</u> <u>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</u> <u>받는 경우(제41조제1항제1호에</u> <u>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장관</u> <u>이 정하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</u> <u>한정한다)에는 해당 요양급여</u> <u>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</u> <u>이 부담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「암관리법」에 따른 암환자</u> <u>2. 「희귀질환관리법」에 따른</u> <u>희귀질환 환자</u> <u>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</u> <u>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</u>